

#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펀드명 : 트러스톤 백년대계 EMP30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 [채권혼합-재간접형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 정에 따른 변 경	<b>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</b> ①(생략)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 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 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 만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 ③ ~ ④ (생략)	<b>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</b> ①(현행과 같음)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 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 을 <b>한도로 하여</b> 그 이행책임을 부 담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 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~ ④ 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 정에 따른 변 경	<b>제23조(판매가격)</b> 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고객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 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b>제</b> <b>3영업일</b>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 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 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 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 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b>제4영업</b> <b>일</b>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③(생략)	<b>제23조(판매가격)</b> 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고객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 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b>3</b> <b>영업일</b>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 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 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 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 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b>4영업일</b>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③(현행과 같음)

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 정에 따른 변 경</p>	<p><b>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b></p> <p>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제5영업일</u>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 구시 <u>제6영업일</u>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 다.</p> <p>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 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 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 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제9영 업일</u>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제10영업일</u>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 금을 지급한다</p> <p>③(생략)</p>	<p><b>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b></p> <p>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5영업일</u>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<u>6영업일</u>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 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 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 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9영업 일</u>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10 영업일</u>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 정에 따른 변 경</p>	<p><b>제26조(환매연기)</b></p> <p>① ~ ④(생략)</p> <p>⑤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 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 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 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 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제5영업일</u> 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<u>제6영업일</u>)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p> <p>2. (생략)</p>	<p><b>제26조(환매연기)</b></p> <p>① ~ ④(현행과 같음)</p> <p>⑤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 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 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 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 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5영업일</u>(자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<u>6영업일</u>)전일과 그 권 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 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자본시장법</p>	<p><b>제43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</b></p>	<p><b>제43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</b></p>

<p>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</p>	<p><b>변경)</b></p> <p>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<u>제5영업일</u>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⑥ (생략)</p>	<p><b>변경)</b></p> <p>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<u>5영업일</u>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</p>	<p><b>제44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b>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② ~ ⑥(생략)</p>	<p><b>제44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b>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<u>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 <u>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② ~ ⑥(현행과 같음)</p>
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</p>	<p><b>제47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b>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47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b>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</p>

	<p>1. (생략)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</p> <p>3. ~ 7.(생략)</p> <p>8.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9. 투자신탁이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10. (생략)</p> <p>② ~ ⑩(생략)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</p> <p>3. ~ 7.(현행과 같음)</p> <p>8.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<u>으로서</u>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9. 투자신탁이 설정하고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⑩(현행과 같음)</p>
-	<신설>	<p><u>부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